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Ⅱ)

조 석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행정사무관

1. 서언
2.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관 1) 우리나라 수입관리 체계의 변천 2)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3)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 구제제도
3. 수출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조사절차 2) GATT Safeguard 제도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1. 조사절차 2. GATT의 반덤핑제도 3.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1) 조사절차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담당기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2장에서 논술한 대로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체계가 사전적 수입관리에서 사후적 수입관리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공자원부(당시 상공부)에서는 '86. 12월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동내용에 따라 산업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주업무로 하는 무역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법적근거는 대외무역법 제4장 제32조~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74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 고시 제90-1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동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인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7~제4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제7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동 제도의 전담운영기관은 무역위원회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산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수량의 증가, 국내 산업피해 또는 피해우려, 수입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동 조사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신청자격 및 서류조사를 주로하게 된다.

그 결과 조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함)에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실시 후 120일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 구제조치 건의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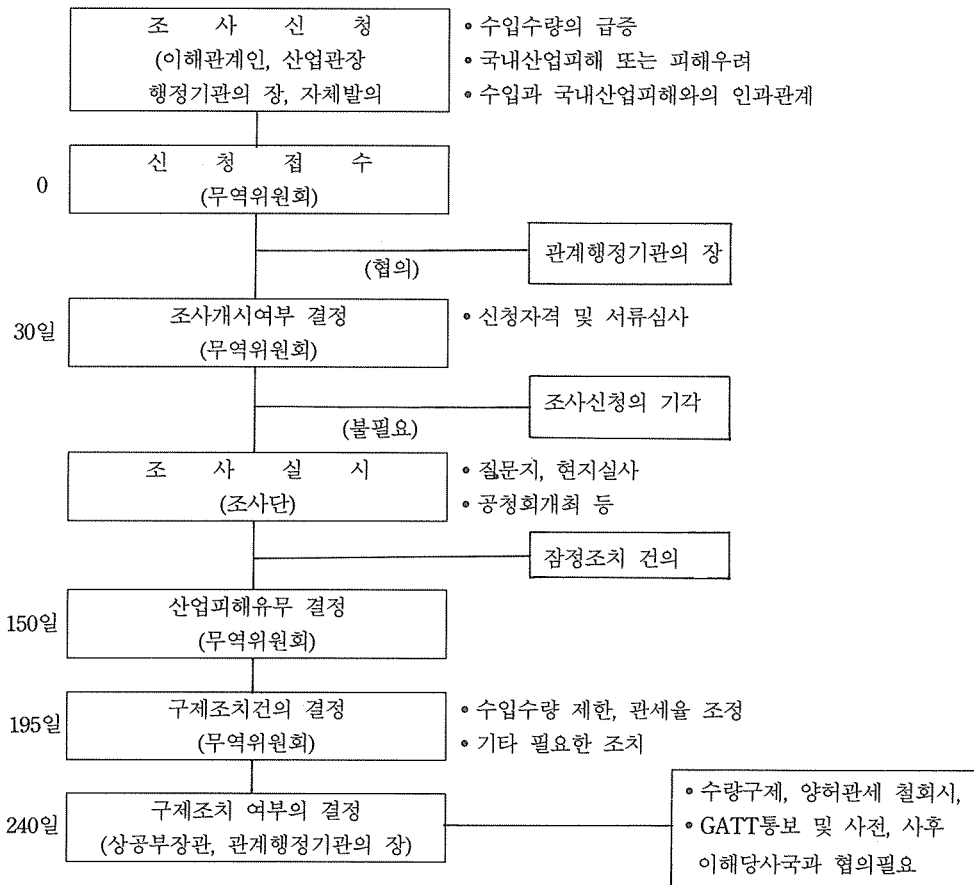
무역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를 건의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그러한 구제조치의 내용이 수량규제 또는 GATT에 이미

신청한 양허관세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GATT에 통보하고 이해당사국과 사전 또는 사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절차를 요약하여 나타낸 그림이 표 3-1이다.

2) GATT Safeguard 제도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국제무역 규범인 GATT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표 3-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도



※ 복잡한 경우 120일 이내 조사기간 연장

GATT의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협정문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이프가드의 의미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GATT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개별 사례에의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등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인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와는 달리 일용 공정하게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와 그 대상국가간에 분쟁의 발생여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GATT 협정문 제19조 제(1)항은 GATT 회원국이 자국의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하여는 ① 수입수량의 증가, ② 수입수량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발전 및 GATT의 무이행의 결과일 것 ③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④ 수입과 산업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동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GATT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우선 가급적 조속히 서면으로 계약국단에 통보하고, 이해당사국에서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GATT에서 규정한 구제조치의 내용은 GATT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보, 관세양허의 철회 또는 조정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제조치는 자국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동하여야 하며, 발동대상 역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특정상품에 제한되어야 한다.

GATT는 또한 이러한 구제조치의 발동대상국이 발동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무역 당해자의 무역이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즉 피발동국은 발동국의 조치발동 후 GATT 협정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동국의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GATT 세이프가드제도는 개별국가의 산업을 특정한 경우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기동성 있게 취하게 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자유무역의 구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이러한 조치가 남용되면 GATT에서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의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GATT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발동요건인 수입수량의 증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 GATT 의무 이행 결과, 동종상품 또는 직접 경쟁상품이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 등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이들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규범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운영례와 그에 따른 문제발생시 국제적인 분쟁해결 사례 등이 국제규범으로서 자리잡게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동 조치의 선별성(Selectivity)¹⁾ 문제와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ment)²⁾ 등이 문제되고 있다.

3) 우리나라제도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우리나라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에 그 법적 근거를 두어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전술한 대로 첫째, 상공자원부 산하의 준 독립기관인 무역위원회에서 전담운영하고 있는 데, 무역위원회의 기능은 산업피해의 조사와 피해여부의 판정에 제한된다.

둘째, 산업피해구제조치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무역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피해판정 기능과 구제조치 기능간의 유기적 관련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제도는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째, 여타 수입관리제도와 상충성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받지 않더라도 수입선 다변화제도, 조정관세제도 등 독립된 산업보호제도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업계로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유일한 산업보호 수단이 아니므로 여타 산업보호제도와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성화가 안되는 점이다.

둘째,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부족 문제이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긍정 판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건의할 권한을 가질 뿐이며, 그리

한 조치권한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무역위원회의 조치건의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피해 구제조치 건의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구제조치의 적시성 문제이다.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한은 법규상 240일로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시간을 놓칠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별표 3-2와 같다.

4)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 제도는 아직 그 활용이 미미한 형편이며, 특히 공산품에 있어서는 더욱 미미하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여타 수입관계제도와 상충성 문제, 제도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여타 산업보호제도와 인식부족 등의 문제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제도홍보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 여타 수입관리제도와 상충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정관세 및 긴급과세제도 등 몇 가지 탄력관세제도와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업계의 입장에서

주 1) 세이프가드조치가 결정되었을 때 그 조치가 최혜국 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가의 문제로서 선진국에서는 차별적인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국에서는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에 위배라는 입장이다.

2) GATT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로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aint), 시장질서 유지협정(Orderly Market Agreement) 등이 있다.

<표 3-2>

제소일시	대상품목(제소자)	피해유무판정	구제조치건의	구제조치
'87. 11. 24	세라믹압전착화 소자 (서형산업(주))	'88. 10. 20 (신강철회)	-	-
'88. 3. 31	앙고라토키틸(한국양토협동조합)	'88. 10. 28(공정)	'88. 12 : '89 국산품우선 구매, '90 보조금 지급	-
'88. 7. 1	새우젓(수산업협동조합)	'88. 12. 27(공정)	'89. 2 : 수입제한	◦ 수입제한 수산청장 추천
'89. 5. 17	고추가공제품(농업협동조합)	'89. 9. 28(공정)	'89. 9 : 고추장수입제한	◦ 수입제한- 보사부장관추천
'89. 7. 24	돼지고기통조림(한국육가공협회)	'89. 12. 19(공정)	'90. 2 : 관세율인상 30%→60%	◦ 관세율인상 30%→50%
'89. 8. 8	집성운모절연제품(대한마이크 (주))	'89. 12. 23(공정)	'90. 2 : 국산품우선구매 권고	-
'89. 8. 26	스테아린산(비누세제협동조합)	'89. 12. 23(공정)	'90. 2:수입물량 자율조정권고	-
'89. 8. 31	초산에틸(한국알콜산업(주))	'89. 12. 23(공정)	'90. 2 : 업계간 수입물량 자율합의	-
'89. 9. 27	압연기용 롤(강원산업(주))	'89. 12. 7(신청철회)	-	-
'89. 11. 1	L-LDPE필름((주)크리랩)	'90. 3. 20(공정)	'90. 5 : 관세율인상 건의 13%→33% 이내	◦ 관세율인상 13%→25%
'90. 2. 20	우모분(한국단미사료협회)	'90. 6. 8(신청철회)	-	-
'90. 3. 6	코코아분유(한국유가공협회)	'90. 10. 15(신청철회)	-	-
'90. 5. 11	나무젓가락(한국목활저협동조합)	'90. 10. 15(공정)	'90. 12 : 관세율인상 건의 13%→53%	◦ 관세율인상 13%→53%
'90. 8. 25	활석분(대한광업회)	'90. 2. 18(공정)	'91. 4 : 관세율인상 건의 10%→40%	◦ 관세율인상 10%→30%
'90. 11. 16	팜콘옥수수(농업협동조합)	'91. 5. 8(공정)	'91. 7 : 관세율인상 건의 50%→90%	◦ 국산품우선 구매
'90. 3. 22	당면(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91. 7. 18(공정)	'91. 9 : 관세율인상 건의 13%→60%	◦ 관세율인상 13%→60%
'91. 10. 28	컴퓨터주기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93. 3. 25(공정)	'92. 5 : 관세율인상 건의 11%→20~25%	◦ 관세율인상 11%→25%
'91. 12. 19	이쑤시개 및 기타 목제품 (한국목환봉협회)	'92. 5. 19(공정)	'92. 7 : 관세율인상건의 단 판 9%→51% 바스틱 51%→77%	◦ 관세율인상 단판 9%→51% 기타 : 조정 관세 기초치시행
'91. 12. 23	우산 및 우산틀 (한국양산공업협동조합)	'92. 5. 19(공정)	'92. 7 : 관세율인상 건의 11%→72%	◦ 관세율인상 11%→72%
'92. 1. 11	볼베어링(한국정밀(주))	'92. 1. 18(신청철회)	-	-
'92. 7. 21	식물성매트류 (담양죽세공예협동조합)	'92. 12. 10(신청철회)	-	-
'92. 11. 7	미역(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92. 11. 27(신청철회)	-	-

는 산업피해여부의 판정이라는 무역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행정당국의 판단에 의해 수입선 다변화 또는 조정관세, 긴급관세를 등을 통한 방식으로 산업의 보호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르는 분명한 근거없이 수입을 억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을 구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통상압력을 견뎌내기 어렵고, 세계 12위 무역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도 걸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연결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신속성 문제로 개별업체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품목을 종합하여 제도운명을 하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그다지 신속한 운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제도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동제도의 조사절차가 복잡하여 업체의 접근이 어렵고 구제조치의 신속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조사신청 서류의 간소화, 조사기간의 단축, 신속한 잠정 조치제도의 도입 등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7월호에 계속>

SGS 선적전 수입검사관련 통상정보 안내

한국 SGS(주)의 선적전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업체로 부터 수집된 불편·부당사례에 대해 한국 SGS(주)에서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계대표와 한국 SGS(주) 관계자가 수출업체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직접토의할 수 있는 회의 정례화

- 수출업체의 불만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개최.
 - 수출업체가 SGS 선적전 수입검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한국 SGS(주)에서 CISS 절차를 자세히 설명.
 - 한국 SGS(주)의 자체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에 애로해소를 위해 사장실에 HOT LINE설치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국제부 무역과 (TEL : 554-6739, 553-0941//7, 교환 3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